

(앞쪽)

제 호

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

사 진

3cm × 4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
개월 이내 촬영한
것)

성 명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60mm × 90mm [보존용지(1종) 120g/㎡ 또는 폴리
염화비닐(PVC)]

(바탕색: 흰색)

(뒤쪽)

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

소 속:
직 급:
성 명: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양곡관리법」 제27조제3항에
따른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
1. 위 공무원은 「양곡관리법」 제2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,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(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·처분에 관한 조사, 법 제20조의2·제20조의3에 따른 표시·광고에 관한 조사 및 법 제20조의4에 따른 혼합유통·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)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.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